

라이나생명

A Chubb Company

지배구조 내부규범

목 차

제 1 장 총칙.....	4
제 1 조 [목적].....	4
제 2 조 [정의].....	4
제 3 조 [공시].....	4
제 4 조 [제정 및 변경 등].....	4
제 5 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4
제 2 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 1 절 이사회의 구성 현황	5
제 6 조 [이사회의 구성].....	5
제 7 조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5
제 2 절 이사의 자격 요건.....	5
제 8 조 [이사의 자격요건]	5
제 9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6
제 10 조 [이사의 결격요건].....	6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7
제 11 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7
제 12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8
제 13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8
제 14 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9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9
제 15 조 [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	9
제 16 조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	10
제 5 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10

제 17 조 [이사회의 소집절차]	10
제 18 조 [이사회 결의방법]	11
제 6 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제 19 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11
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 1 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1
제 20 조 [이사회 내 위원회]	11
제 21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2
제 22 조 [감사위원회]	12
제 23 조 [리스크관리위원회]	13
제 24 조 [보수위원회]	14
제 2 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제 25 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15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15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15
제 26 조 [임원의 자격요건]	15
제 27 조 [임원의 결격요건]	15
제 2 절 임원의 권한 및 책임	15
제 28 조 [임원의 권한 및 책임]	15
제 3 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16
제 29 조 [임원의 선임 및 퇴임]	16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17
제 30 조 [임원에 대한 교육제도]	17
제 31 조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17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에 관한 사항	17

제 32 조 [임원 성과평가].....	17
제 33 조 [임원의 보수].....	18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18
제 1 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18
제 34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18
제 35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19
제 36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19
제 37 조 [비상상황시 경영승계 절차].....	19
제 2 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19
제 38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19
제 3 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20
제 39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20
제 4 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20
제 40 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20
제 41 조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20
제 5 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21
제 42 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21
제 6 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21
제 43 조 [책임경영체제확립].....	21
부 칙.....	21
부 칙.....	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으로서,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주주와 보험계약자 및 그 밖의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임원”이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3. “사외이사”란 지배구조법 제2조 제4호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4.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대주주”란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6.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지배구조법 제8조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7. “준법감시인”이란 지배구조법 제25조의 준법감시인 말한다.
8. “위험관리책임자”란 지배구조법 제28조의 위험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공시]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익년도 정기주주 총회일 20일 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시 및 그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의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의회의 의결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 변경 등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전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감독규정, 정관, 이사회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감독규정, 정관, 이사회규정 등이 이 규범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구성 현황

제6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임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③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선임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의장이 불참하거나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최초 이사선임일자 순으로, 위 선임일자가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⑦ 회사 및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 요건

제8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금융, 보험, 경영 등 관련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자로서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사외이사는 제8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 [이사의 결격요건] ①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되지 못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회사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11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위해 상법, 보험업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세부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관련법령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
 4. 기타 대표이사가 경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④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을 승인한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⑥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⑦ 사외이사는 제6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 등의 참여야 할애하여야 한다.
- ⑧ 회사는 이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유능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⑨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5조 [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 ① 이사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며, 그 외 사내이사 등은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려는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본인을 이사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낙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5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3.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해임되는 경우
 4. 형벌 등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사망,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유고 상황으로 이사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경우
- ② 이사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않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외이사가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7조 [이사회 의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업무상 필요 시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그 이사회 의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 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늦어도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소집 통지에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명시한다.

⑤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⑥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자료는 각 회의 소집 통지 시 제공한다. 단, 사외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회의 전일까지 회의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1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1항에서 실시한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20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권한 및 소집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2. 기타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를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2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업무감사권

2. 이사 보고의 수령권

3.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4.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5. 각종 소의 대표권

6.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7. 전문가의 조력요청권

8.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권한
 9.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정보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구
 10. 관계자의 출석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
 11.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접근 및 봉인
 12. 회계관련 거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13.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14.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당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기재한 소집통지와 안건 관련자료를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⑧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⑩ 기타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의결사항 및 심의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리스크관리위원회] ①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위험관리기준 및 동 기준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8조 4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되는 위기상황분석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9.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10. 재보험 운영 전략 설정
 11.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및 전략적 자산배분(SAA) 수립
 12.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중요사안의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 발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를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는 임직원의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수립 및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제6항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을 정하여,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를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5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 절차와 지표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6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 중 이사의 자격요건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 업무집행책임자 등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②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④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동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7조 [임원의 결격요건] 이사인 임원의 결격 요건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임원의 권한 및 책임

제28조 [임원의 권한 및 책임] ① 이사인 임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사항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 외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부여 받은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이사회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④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영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⑥ 그 밖에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29조 [임원의 선임 및 퇴임] ① 이사인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제16조에 따른다.

③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제4항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에 따른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이사가 아닌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처리 하며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임기 만료

2. 사임
3. 지배구조법, 관련법령, 정관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타 회사와의 위임계약 종료사유 발생
4. 인사 기타 내부규정에 따른 면직
5. 기타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⑦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임원을 제외한 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임기 및 유고 시 직무대행자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30조 [임원에 대한 교육제도] ① 회사는 신임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경영,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관련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 ② 회사는 재직중인 임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임원은 회사에서 정한 내부 또는 외부 교육 및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① 회사는 직원의 업적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임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임원 후보군 중 선발된 후보자에 대하여 교육 또는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임원후보자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사의 교육규정 등에 따른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32조 [임원 성과평가] ① 이사의 성과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하며,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과는 대표이사가 평가한다.

- ②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수익성, 성장성, 경영효율 지표 등 계량적 평가 외에 필요 시 정성적 평가를 활용한다.
- ③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정량적인 평가와 비정량적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업무 성과와 잠재적 성장 가능성 등을 성과 측정 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 ④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이사회 운영 지원부서 평가로 나누어 매 결산기 종료 후 실시한다.
- 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경영성과와는 독립적인 지표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⑥ 임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보수의 지급, 임면, 연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에 관한 세부내용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보수와 성과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임원의 보수 중 성과보수는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사인 임원의 경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보수한도 내에서 위임계약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개인별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며, 담당업무, 직급, 경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차등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 체계 및 지급 방법 등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보수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회사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④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임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34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경영승계 계획에는 아래 각 호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2.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3.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4.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5. 비상상황 발생 시 직무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5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 또는 최고경영자의 퇴임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 받아, 제39조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제37조 [비상상황시 경영승계 절차] ①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 발생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5조 제2항, 제36조에 준해서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38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회사는 이사회 운영 지원부서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여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이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라 한다)로 지정하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기타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 후보 발굴 시 주주 및 이해관계자,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후보군 중에서 1인 또는 2인 이상의 후보를 최고경영자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 제39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상법,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요건 및 제8조에 명시된 이사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보험 및 금융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직무윤리 등을 두루 갖춘 자, 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도덕성, 책임감,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판단력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개인적 품성과, 장기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경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제40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후보 발굴 시 주주 및 이해관계자,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및 제39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제41조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 등 후보군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관리업무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신규 선발, 기존 후보의 유지 또는 퇴출을 통해 후보군을 확정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에 대해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2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3조 [책임경영체제확립] ①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따른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 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한다.

⑤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은 제32조, 선임 및 퇴임 기준은 제2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